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1 선고 2020가합54412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서울고등법원 2022. 2. 16 선고 2021나2031659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7. 21 선고 2020가합544124 판결

전문

원 고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추은혜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호, 이정은, 명상현

변론종결 2021. 6. 16.

판결선고 2021. 7. 21.

주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. 5. 11. 체결된 증여계약을 228,311,6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228,311,64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보증보험계약과 보험금 지급

1) 원고는 2017. 2. 28.과 2017. 3. 6. 피고의 남편 C이 대표이사이고, 피고가 사내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2건의 이행(계약)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, C이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주식회사 D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, 위 보증보험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8. 8. 28.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19,915,995원을, 2019. 3. 18.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79,635,749원을 각 지급하였다.

2) 주식회사 D과 C이 2020. 5. 7.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해야 구상금은 228,311,645원이다.

나. C의 증여 및 피고의 매도

1) C은 2018. 4. 27. 어머니 G이 사망하여 2018. 5. 17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(이하 '이 사건 각 부동산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18. 4. 27.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, 2018. 5. 17.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고(이하 '이 사건 증여계약'이라 한다),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2) 피고는 2020. 3. 10. H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85,000,000원에 매도하고, 2020. 3. 31.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, 2020. 3. 17. I에게 별지 목록 제2, 3항 부동산을

300,000,000원에 매도하고서, 2020. 3. 25.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 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9, 12호증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을 제1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

가. 피보전채권의 존재

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,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(대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7다208294 판결 등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C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은 2017. 2. 28.과 2017. 3. 6.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, 갑 제10,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은 2018. 5.경 대출금, 물품대금, 임금 등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, 2018. 5. 17.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C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, 원고가 2018. 8. 28. E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119,915,995원을, 2019. 3. 18. F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79,635,749원을 각 지급하여 구상금채권이 현실화되었으므로, 원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

1)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,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데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), 위 인정 사실에

의하면 C은 2018. 5. 17.배우자인 피고에게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므로,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C과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.

2)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. 11. 24.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기로 약정하고서 2018. 5. 17.에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2015년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,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5. 11. 24. 피고에게 C이 부친 J, 모친 G으로부터 발생하는 상속재산(동산, 부동산) 일체를 그 상속재산이 발생하는 시점에 즉시 증여할 것을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, 위 2015. 11. 24.자 약정은 C이 향후 상속받을 재산을 실제 상속시에 즉시 피고에게 증여하겠다는 약정에 불과하고, 위 약정 당시에는 C의 모친이 사망하지 아니하였으며, 위 약정에는 증여의 목적물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증여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어, 위 약정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, 위 약정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, 피고가 2020. 3.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고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,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에 의함이 상당하다.

가액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0. 3.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385,000,000원,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2020. 5. 7. 기준 228,311,645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위 변론종결일 기준 시가 385,000,000원과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원고의 채권액 이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228,311,645원 중 더 적은 금액인 원고의 채권액 상당액이 된다.

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228,311,64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228,311,645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

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 론

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관용, 판사 이재욱, 판사 전훈자

목 록

1. 안성시 K 대 482㎡
2. 안성시 L 답 3,605.4㎡
3. 안성시 M 답 890.9㎡ 끝.

